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717-1996-293393

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0년6월18일	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1층 1187.1㎡ 2층 1187.1㎡ 3층 1187.1㎡ 4층 1187.1㎡ 5층 1187.1㎡ 6층 1187.1㎡	도면편철장 제141책제165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2	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1층 1187.1㎡ 2층 1187.1㎡ 3층 1187.1㎡ 4층 1187.1㎡ 5층 1187.1㎡ 6층 1187.1㎡	1995년1월1일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1999년11월17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141책제165장
3	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02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1층 1187.1㎡ 2층 1187.1㎡ 3층 1187.1㎡ 4층 1187.1㎡ 5층 1187.1㎡ 6층 1187.1㎡	도로명주소 2012년5월8일 등기

열 램 용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구정리 70-2	대	7275m ²	1990년6월18일
2 (전 2)				1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 1990년6월18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3	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16년6월2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수	건물번호	건물내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0년6월18일	제6층 제609호	철근콘크리트조 71.26m ²	도면편철장 제141책제165장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727500분의 3850	1990년6월8일 대지권 1990년6월18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0년8월22일 제52556호	1990년2월12일 매매	소유자 구종길 581020-***** 영일군 오천읍 구정리 70-1 제일아파트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103동-609호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경정	2014년3월19일 제24703호	1990년8월22일 신청착오	구종길의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제일맨션 103-609
2	소유권이전	2014년3월19일 제24704호	2014년3월17일 매매	소유자 전직환 701217-*****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60번길 25, 라동 101호 (태한빌라) 거래가액 금40,000,000원
3	압류	2016년1월21일 제6520호	2016년1월14일 세외수입 압류등기(장수 과 세외-730)	권리자 대구광역시달서구 5148302188
4	3번압류등기말소	2017년3월21일 제21148호	2017년3월21일 해제	
5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4월22일 제1853223호	2025년4월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372 1)	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10111-0099774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(연지동, 서울보증보험) (대구신용지원단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근저당권설정	1990년8월22일 제52557호	1990년8월21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일천육백구십만원 채무자 구종길 영일군 오천읍 구정리 70-1 제일아파트 103동-609호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111235-0001908 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36-3 (포항지점)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의하여 1999년 11월 11일 전산이기
1-1	1번근저당권이전	2014년3월19일 제24760호	2001년11월1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(을지로2가) (대구업무지원유닛)
2	근저당권설정	2014년3월19일 제24705호	2014년3월19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8,800,000원 채무자 전직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60번길 25, 라동 101호 (태한빌라) 근저당권자 경북대구나눔협동조합 174836-0003567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64-2 (우현지점)
3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4년3월19일 제24761호	2014년3월19일 해지	
4	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5년5월19일 제49375호	2015년5월19일 해지	
5	주택임차권	2021년12월8일 제87052호	2021년12월1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1카임1055)	임차보증금 금45,000,000원 범 위 6층 제609호 71.26㎡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7년11월14일 주민등록일자 2021년8월12일 점유개시일자 2017년11월20일 확정일자 2017년11월30일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-0033355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5-1				5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1년12월8일 부기

-- 이 하 여 백 --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

열람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1월21일 10시23분44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17-1996-293393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70-2 오천제일맨션 제103동 제6층 제609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전직환 (소유자)	701217-*****	단독소유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60번길 25, 라동 101호 (태한빌라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4월22일 제1853223호	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	전직환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임차권설정	2021년12월8일 제87052호	임차보증금 금45,000,000원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	전직환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